

용인시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

제정	1982. 4. 15	조례 제731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3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1999. 2. 5	조례 제16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1. 3. 16	조례 제323호
	2003. 3. 21	조례 제432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694호

제1조(목적) 「윤락행위 등 방지법」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를 둔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2조(위치) 여성복지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는 용인시청에 둔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3조(업무)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1.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·상담
2. 귀가조치
3. 취업안내 및 알선
4.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조치
5. 기타 요보호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치

제4조(소장)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, 시 본청 여성업무 담당 담당관·과장이 겸임한다. <개정 1999. 2. 5, 2003. 3. 21, 2005. 10. 5>

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① 상담소에는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위탁경영)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사업단체 또는 종교단체인 법인에게 위탁 경영시킬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용인시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6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9. 2. 5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3조 생략

부칙 <2001. 3. 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3. 2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94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